

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
(이춘석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8713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4. 29.

발 의 자 : 이춘석 · 안호영 · 윤준병
이연희 · 위성곤 · 윤종균
박 정 · 홍기원 · 이정문
황명선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최근 도박이 더 이상 어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인식하에 학교의 장이 학생을 대상으로 연 2회 이상 청소년 도박예방교육을 실시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의 법 개정이 이루어진 바 있음.

그런데 개정된 현행법도 청소년 도박예방교육과 학교교육 연계에 필요한 시책 수립과 도박예방교육의 실시 의무·횟수만 규정하고 있을 뿐 청소년 도박예방교육을 위한 전문강사의 양성 및 관련 프로그램의 개발·보급 등 세부적인 내용은 부재한 상황임.

이에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의 사업에 전문인력 자격제도 정착 지원을 명시하고, 학교에서 실시되는 청소년 도박예방교육이 보다 효과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청소년 도박예방교육 관련 전문인력 확보 및 프로그램 개발·보급 방안을 청소년 도박예방교육 시책에 포함시키도록 하며, 청소년 도박예방교육이 원활하게 운영되기 위하여 필요

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(안 제14조제1항제3호, 제18조의4제1항 및 제18조의4제5항 신설).

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4조제1항제3호 중 “양성”을 “양성 및 자격제도의 정착 지원”으로 한다.

법률 제21092호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 제18조의4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이 경우 위원회는 청소년 도박예방교육 관련 전문인력 확보 및 프로그램 개발·보급 방안을 시책에 포함하여야 한다.

⑤ 위원회는 청소년 도박예방교육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법은 2026년 5월 12일부터 시행한다.

<p><u><후단 신설></u></p> <p>② ~ ④ (생략)</p> <p><u><신설></u></p>	<p><u>이 경우 위원회는 청소년 도박 예방교육 관련 전문인력 확보 및 프로그램 개발·보급 방안을 시책에 포함하여야 한다.</u></p> <p>② ~ ④ (현행과 같음)</p> <p>⑤ <u>위원회는 청소년 도박예방교육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</u></p>
---	--